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0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안 제2조)
- 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13세 → 9세)(안 제8조 제2항제7호)
- 다.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제2항제9호)
- 라.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안 별표 1)
-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한 용어 개선(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있음(반영)

< 미 반 영 >

- ▶ (안 제4조)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류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변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별표1) 성문화센터 ·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분소도 시설로 표기 요청
⇒ 재구조화에 따라 대표센터 외 분소는 부서단위로써 민간위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 (별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사무소 위치 변경(마포구 → 중구)
⇒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마포센터가 대표센터로 기능하며, 주사무소 변경 이유가 없음

————— < 반 영 > —————

- ▶ (별표1) 자립지원관 및 강북일시청소년쉼터 위치 정정 요청
⇒ 시설의 위치 현행화를 위해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현수 (☎ 2133-411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을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비숙박시설 :”을 “비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숙박시설 :”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13세”를 “9세”로, “경우 : 월 사용료”를 “경우: 월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를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설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거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동의를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설명	기능	위치
①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 활동 시설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종로구	시립종로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현사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2. 청소년 복지 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③ 유스호스텔				
3. 기타 청소년 시설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사남)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복)	"	
	(이동)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종로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운행형)	"	시름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로마이너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신 · 구조문대비표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숙박시설 : 09:00~22:00
 2. 숙박시설 : 24시간

②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 표 2에서 정한 별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 10

제7조(사용시간 등) ① -----
----- . -----
----- . -----
----- . -----
----- .

1. 비숙박시설: -----
 2. 숙박시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 ----- 시장 -----

-----.

(2) -----

1. ~ 6. (현행과 같음)

7. 9세] -----
----- 경우: 월 사용료의 --

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

-
8. -----

-- 경우: -----

9.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

<삭 제>

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범위-----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p>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 ----- -----.</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p>
<p>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u>범위</u> 안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① ----- ----- ----- ----- ----- ----- ----- ----- ----- <u>범위</u>-----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5조(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위</u>----- ----- -----. 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한 손실 보전금 증액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7호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13~55세 여성에서 9~55세 여성으로 확대 (9~12세 여성에 대한 감면 손실 보전금 추가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24년 1년간 청소년센터 수영장을 이용한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사용료 납부금액 총 합계의 10%(감면율) 산출, '24년 대비 '25년 시립청소년센터 전체 감면(저소득, 다동이 등 기 추진 중인 감면) 금액의 증가율 1%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청소년시설 9~12세 여성 감면 손실 보전금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소계(a)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국비	0	0	0	0	0	0
	지방세수입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등	0	0	0	0	0	0
민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71,500

5.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김태영(☎2133-41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4년 타 감면(저소득, 다동이 등)을 받지 않은 만 9~12세 여성 청소년의 연간 수영장 사용료 총 납부금액의 10% : 33,959,971원

(단위 : 원)

연번	센터명	'24년 9~12세 여성 수영장 사용료 납부내역(A)	감면 손실 보전금 예상 내역(B=A/10)
	계	339,599,710	33,959,971
1	강북청소년센터	13,070,000	1,307,000
2	구로청소년센터	47,769,300	4,776,930
3	금천청소년센터	11,835,130	1,183,513
4	노원청소년센터	62,430,850	6,243,085
5	동대문청소년센터	14,037,000	1,403,700
6	마포청소년센터	36,259,870	3,625,987
7	망우청소년센터	3,616,000	361,600
8	목동청소년센터	10,537,000	1,053,700
9	문래청소년센터	48,893,010	4,889,301
10	서대문청소년센터	35,856,400	3,585,640
11	성동청소년센터	8,100,000	810,000
12	성북청소년센터	17,488,150	1,748,815
13	수서청소년센터	3,279,600	327,960
14	은평청소년센터	26,427,400	2,642,740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중 14개소만 수영장 운영

2. '24년 청소년센터 전체 감면금액 대비 '25년 감면(예상)금액 증가율
: 약 1%

(단위 : 천원)

'24년 감면금액	'25년 감면 예상금액	증가금액(증가율)
3,016,612	3,049,997	33,385(1%)

⇒ 33,959,971원 × 101% = 약 34,30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